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5.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4월 2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0. 5. 11.) 상정 “보류” 의결

마. 재상정일자 :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0.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가. 제안이유

-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악취 관리는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악취 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악취지도의 작성,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준용(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임선영)

- 본 건은 생활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 악취저감 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활악취는 주민의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되어 주민의 건강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생활악취에 대한 법적 규제는 다소 미비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만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음. 따라서 생활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관리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20 호
----------	---------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악취 관리는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악취저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악취지도의 작성,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라. 준용(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악취방지법」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에 3억원 반영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원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0. 2. 20. ~ 3. 1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세출예산 순증가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 비용추계기간: 8개월(2020. 5월~12월)
- 비용추계내역: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설치(200인조 이상) 405개소+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신규설치(200인조 미만) 41개소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300,000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00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 (200인조 이상) 405개소 200,000천원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신규 설치 (200인조 미만) 41개소 100,000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0					0
	소계(a)	0					0
세출	민간이전	300,000					300,000
	소계(b)	300,000					300,000
□ 총 비용(a-b)		-300,000					-300,00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민간							
기타(구비)		300,000					300,000
합계		300,000					300,000

6. 추가의견

-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생활환경국 환경과 하성숙
연 락 처	02-2670-34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